[일련번호 : 1]

경 기 도 체 육 회

주의·개선·권고 요구

[제 목] ** 평택시체육회 신규직원 채용 후 임용조치 부적정**

[소 속 기 관] 평택시체육회

[조 치 기 관] 평택시체육회

[내 용]

1. 신규직원 채용 과정

평택시체육회(이하, 시체육회)는 사무국 운영 규정 1)제2조(채용)에 의거 ****년 신규직원 직원(*급, *급) 채용을 평택시 체육진흥과(이하, 체육진흥과)에 위탁 의뢰하였고, 체육진흥과는 동년 *월 신규직원 2)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. 이때 체육진흥과 담당 주무관은 시체육회 *급 정원이 현원과 같음을 확인하고 市 내부보고를 통해 *급으로 변경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. 이하 '**** 평택시체육회 신규직원(*급, *급) 위탁채용' 과정은 다음과 같다.

[표1] ** 평택시체육회 신규직원(*급, *급) 채용 과정**

구 분	주요내용	비 고
위탁건의	· ****. **. **.(*)	市체육회 ▶ 市체육진흥과
계획수립	· ****. **. **.(*)	市체육진흥과
공고기간	· ****. **. **.(*) ~ ****. **. **(*)	시청·체육회 홈페이지
원서접수	· ****. **. **.(*) ~ ****. **. **(*)	市체육진흥과
서류전형	· ****. **. **.(*)	市체육진흥과
면접시험	· ****. **. **.(*)	블라인드 면접
최종발표	· ****. **. **.(*)	최종합격자 : *명
채용결과통보	· ****. **. **.(*)	市체육진흥과 ▶ 市체육회
임용예정일	· ****. **. **.(*)	일반직 *급, *급

※ 자료 : 채용 관련자 제출 자료 재구성

1) 제2조(채용)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평택시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.

2) ****.**.**.(*)

****.*.**. 체육진흥과는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고, 다음날 시체육회로 통보하였다. 하지만 시체육회는 임용예정일인 ****.*.**.에 신규직원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았다.

시체육회는 신규직원 채용 *급 합격자에 대해 합격자의 자격(나이, 학력, 경험 등)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****.*.**. 체육진흥과에 *급 채용합격자에 대해 임용불가, *급 합격자는 임용 통보를 하였다.

한편, 신규직원 *급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맞춰 전 근무처인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를 퇴사하고 시체육회의 임용을 기다렸으나 임용되지 않았다. 이후 임용지연에 대하여 1~3차의 내용증명을 시체육회에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청와대 국민청원,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.

이후, ****.*.**. 市와 시체육회, *급 합격자는 의견교환서 서명을 통해 합의하였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표2] 평택시청·평택시체육회·*급합격자 삼자 의견교환서 내용

- 市 : 삼자간 의견교환 내용을 토대로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협조 - 체육회 : 언론을 통해 사과하고 임용일정을 市와 협의하여 처리 - 합격자 : 체육회장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○○○○○○로 전출 처리를 수락

****.*.*. 시체육회는 *급 합격자를 신규직원으로 임용하였고 임용당일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로 전출을 보내었다. 이어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는 *급 합격자를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로 파견하였다. 현재(****년 *월) *급 합격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.

2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가. 신규직원 채용 진행시 사무국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 미준수

시체육회는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규정 [3]제5조(기능) 1항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였으며, 사무국 운영 규정 [4]별표 제1호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의 자격기준에 대한 심의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.

나. 신규직원 채용위탁 진행 시 업무협의 등 행정소홀

시체육회는 평택시청 체육진흥과에 채용위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소홀히 하였고, 채용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의 자격(나이, 학력, 경험 등)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용을 지연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다. 또한 *급 합격자의 1~3차 내용증명에 회신을 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.

다.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의 손상

시체육회의 부적정한 임용지연으로 *급 합격자는 청와대 국민청원, 국민신문고, 스포츠윤리센터, 대한체육회, 경기도청, 평택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사 등에 이슈화되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켰다.

---

3) 제5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
4) 별표 제1호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
※ 자격기준에 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

라. 평택시체육회 규정(정관) 미흡

시체육회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[5]제53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에 따라 시군체육회 규정을 제·개정 해야함에도 임직원 행동강령 등 **** 년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,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학교체육, 생활체육, 경기력향상, 여성체육 등 이사회와 별도로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어야하나 이사와 위원을 겸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.

마. 市와 市체육회 채용위탁 및 각종 업무협의 진행 등 소통 및 협력 부족

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조정 협의 및 신규직원 채용위탁 진행 시 체육진흥과의 일방적인 직급변경 등 기관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으로 전개되었으며, 위탁채용 시 채용과정 협의, 자격기준 요구 등의 소통부족으로 인하여 채용 합격자의 임용지연 등의 결과 초래하였다.

3. 관계기관 의견

평택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(기능)에 의거 “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것”이, 평택시청으로 채용위탁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, 평택시청에게 직원채용에 대한 권한까지 위탁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. 하지만 이는 자체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아울러,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 [6]제54조(규정의 해석 등)에 의거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여야 한다.

---

5) 제53조 ①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을 제· 개정하여야 한다.
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시·군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.
③ 시·군체육회는 규약(또는 기본규정), 직제 규정의 제·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본회에 알려야 한다.
④ 시·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 및 제 규정(사무국 규정 포함)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⑤ 이 규정 개정할 때 시·군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·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6) 제54조 ① 이 규정은 시·군체육회 규약(또는 기본규정)에 우선하며, 시·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·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.
② 시·군체육회가 본회 규약,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또한 평택시 체육진흥과에 채용위탁에 있어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요구사항이 있을 시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었으나 평택시 체육진흥과에서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. 그리고 *급 합격자의 임용 지연이 된 사실에 대해 업무소홀과 근무태만의 책임전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. 이를 채용 관계자 등 확인해 본 결과 채용과정에서 자격기준 등 충분한 의사 전달 및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며,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소통하였고 양 기관의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조치할 사항 평택시체육회는

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고 *급 신규직원 채용합격자를 부당하게 임용 지연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추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필기시험 및 인·적성검사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자체 교육훈련제도 등을 통한 사무국 직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내부승진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**(주의)**

경기도체육회 제 규정의 시군체육회 규정 제53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에 의거 평택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 및 사업운영 시 현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(개선)**

평택시(체육진흥과)와 평택시체육회 업무연찬을 통해 자체 체육 프로그램 개발, 업무협의 및 소통 등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(권고)**